

계양 호성해링턴 플레이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및 규모

■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13번지 일원

■ 공급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19층~31층 16개동 총 1,669세대 (조합원공급 450세대, 임대 84세대, 보류지 4세대포함) 중 일반공급 1,1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 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주택형						
59A	59B	72A	72B	84A	84B	소계
23	8	11	18	39	7	106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배정기준

대상자	배정기준	비고
보훈대상자,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특별공급 대상자	85m이하 주택 건설 양 10%범위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및 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기관의 추천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또는 부적격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배우자 포함)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족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3. 특별공급 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신청일자	당첨자선정	등호수발표	계약체결	장소
2018. 03. 13 (화) 10:00 ~ 14:00	2018. 03. 13 (화) 17:00	2018. 03. 21 (수)	2018. 04. 02 (월) ~ 2018. 04. 04 (수)	당사 견본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은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야만 가능

※ 당첨 등 호수 확인 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http://www.ap2you.com) 또는
[당사 홈페이지 \(http://www.gyeyanghyosung.com\)](http://www.gyeyanghyosung.com)

단,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신청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 일에 신청하여야함. [미 신청 시 당첨자선정(등·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여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후 등·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 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등·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이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함.

3. 특별공급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명단관리, 계약체결불가)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 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 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호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도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 (특별·일반 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 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 층이 3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당해지역 전입일 표기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포함)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 각 해당기관에서 관리명단으로 접수한 자는 제외
	○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또는 서명 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청으로 인한 당청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기 바람.

4. 견본주택 위치 및 기타 문의사항

■ 견본주택 위치 및 기타 문의사항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032)541-3030





032)541-3030

【모델하우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25-121번지】

홈페이지 : <http://aeyanghyosung.com>
 견본주택 :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25-121번지
 「계양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문의전화 : 032-541-3030

